

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1066
결재일자	2016.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치운영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명희	이철암	한재현	이용식	김병환	03/24 김영배
협 조					
	정무보좌관		윤정배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통장제도 운영 개선 지침

2016. 3.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통장제도 운영 개선 지침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통장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개정 배경

- 통장 공개모집시 신규 신청자가 없는 경우 행정 공백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 마을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 시대에 걸맞은 통장의 새로운 임무 부여의 필요성 대두

II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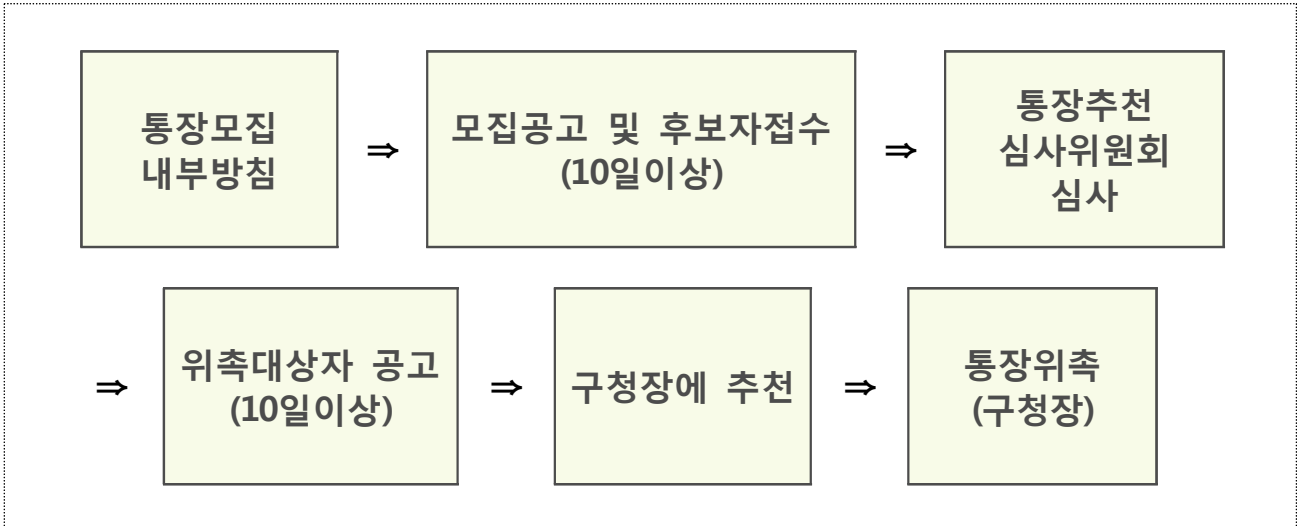
- 의원 입법 발의 : 2016. 2. 3.
- 입법 예고 : 2016. 2. ~ 2016. 2.
- 조례(안) 구의회 의결 : 2016. 2.22.
- 개정 조례 공포 : 2016. 3. 3.

III 주요 개정 내용

- 통장의 임기 조항 신설
 - 제4조(통장의 임기)
 -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통장의 임무 조항 신설
 - 제7조(임무)
 - 제12호 :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

IV 세부 추진 사항

□ 통장 후보자 추천 절차



□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한 통장 추천

- 통의 신설, 통장 결원, 임기만료, 해촉 등의 사유로 통장추천 필요시 공고를 통한 적극적 공개모집[별지 제1호 서식]
-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며,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공고하여 통장 모집 내용을 해당 통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공고 절차
 - 공고문안을 작성하여 내부 방침을 득하고 통장공고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
- 후보자 접수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20명 내외
 -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반장 및 주민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
- 운영 : 통장추천 사유 발생시 동장이 위촉하여 비상설기구로 운영
- 심사
 - 후보자 1명 신청일 경우
 - 20인 내외로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자체 심사로 결정

- 후보자 2인 이상 신청일 경우

-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심의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통장 후보자를 심사

1. 신뢰도(20점)
2. 업무수행능력(30점)
3. 행정관심도 및 참여도(30점)
4. 봉사자세(20점)

○ 통장 위촉대상자의 선정은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위원회는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선정 가능

○ 회의록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별지 제4호 서식]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위촉대상자 공고

○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통장 위촉대상자를 통장공고대장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해당 통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함[별지 제5호 서식]

□ 통장 위촉

○ 동장은 임기만료일이 속한 전(前)달 25일까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통장 위촉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

○ 통장 위촉시 관련 서류 제출

-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승낙서[별지 제8호 서식], 공용주민등록등본, 이력서사본, 사진

□ 통장의 임기관련 사항

- 임기에 대한 개정규정은 3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종전 통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

예시1) 최초 위촉일이 2004. 7. 1인 통장이 2010. 7. 1자로 재위촉되어
활동중인 경우

⇒ 통장의 임기만료일은 2012. 6. 30 이며,
연임은 2회 가능하므로 2016. 6. 30 까지 통장활동 가능

예시2) 최초 위촉일이 2004. 7. 1인 통장이 2010. 7. 1자로 재위촉되고
2회 연임으로 2016. 6. 30 이 임기만료되었으나,
3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

【조례 공포일 : 2016. 3. 3기준】
⇒ 통장 임기는 2016. 6. 30 이나, 조례 공포시 1회 추가 연임이
가능하므로 2018. 6. 30 까지 통장활동 가능

- 종전에 통장이었던 주민이 다시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촉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사임 및 임기 종료에 따른 해촉 포함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통장의 임무

- 임무 신설에 따른 통장 업무 강화
 - 복지대상자(특세계층, 위기가정) 발굴 및 생활실태 파악
 - 발굴된 복지대상자를 우리동네 주무관에게 연계
 - 우리동네 주무관과 동행하여 복지대상자 가정 방문

V

행 정 사 항

- 통장추천 및 위촉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비치
- 모든 공고 관련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
- 주민 의견수렴 관련자료 기록 유지
- 통장 임기 만료 전에 공고 절차를 통한 추천 의뢰
- 통장 후보자 심사시 통장 교육 및 주요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통장에게 가점 부여
- 통장 위·해촉시 통장등록부(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하여 비치 및 관리 철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 동 공고 제 호

통장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 동 제 ○○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통

- 통 명 : ○○ 동 제 ○○ 통
- 관할구역 :

접수 기간 :

통장신청 자격요건

-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5세 이상의 남녀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으로서 통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동 주민센터 비치)
-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부(지원동기, 경력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 : ○○ 동 주민센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장

통장 후보 신청서

통 명 : 제 ○○ 통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택) (핸드폰)
직 업			

상기 본인은 ○○ 동 제 ○○통장 후보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 동 장 귀하

○○동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표

□ 제 ○○○ 통

후보자명 :

평가 항목	세부 사항	배 점	점 수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거주기간• 추천내용• 반장 및 인근주민의 덕망과 신임도 등	20	
업무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장 지원동기 및 목적• 사회경력• 시간적 제약 여부• 원활한 업무수행가능 여부 등	30	
행정관심도 및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동정사업 참여 및 기여도• 통장 교육 참여 여부• 직능단체 참여도 등	30	
봉사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봉사활동 참여<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사기간, 봉사활동 종류 등 평가• 표창수상 및 후보자 선정 여부• 대민봉사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	20	
총 점			

※ 후보자의 평가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한다.

년 월 일

심사자 :

(서명)

○○동 통장추천심사위원회

회 의 록

일 시 :

장 소 :

통장 후보자

- 성 명 :

회의 내용

- 개최시간 :

-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 폐회시간 :

출석위원 : 명

○○○, ○○○, ○○○, ...

- 위 원 장 : (서명)

- 위 원 : (서명)

- 위 원 : (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동 공고 제 호

통장 위촉대상자 공고

○○동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통장 위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통장 위촉대상자 인적 사항

1. 통 명 :
2. 성 명 :
3. 주 소 :
4. 관할구역 :

공고기간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장

통장추천서

○○동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 사람을 ○○동 제○○통장 신규(재)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신규(재)위촉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집 : 핸드폰:

년 월 일

○○ 동장 ○ ○ ○ (인)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통장승낙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성북구 ○○동 제 ○○ 통장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인)

성북구청장 귀하

